

2021년도 재외동포재단 체험형 청년인턴(일반·장애인) 공개 채용

750만 재외동포 관련 지원·협력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전 세계에서 코리안 파워를 실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희망인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4. 16.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1. 모집인원

채용분야(직무)	구분	인원	근무형태	근무지	직무
체험형 청년인턴	청년인턴(일반_제주)	4명	전일제	제주 본사	재외동포사업 업무 지원
	청년인턴(일반_서울)	1명		서울사무소	
	청년인턴(장애인_제주)	2명		제주 본사	

※ 직무기술서: 별첨1 참고

2.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1. 4. 30.)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
- 근무 시작일에 즉시 근무 가능자
 -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전일(09:00~18:00) 근무 가능자
-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제외 대상
 - 재외동포재단 청년인턴 경력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자 채용 제외
 -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나. 응시자격

채용분야(직무)	구분	내용
체험형 청년인턴	청년인턴 (일반_제주)	○ 공통자격 참고
	청년인턴 (일반_서울)	
	청년인턴 (장애인_제주)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에 한함)

* 중복 응시 불가하며, 중복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우대(가점)사항

유형	자격 및 가점부여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전형 단계별 5% 또는 10% 가점 부여
지역인재	○ 이전 지역(제주) 인재: 서류전형 3% 가점 부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제주) - 적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21년 8월 졸업 예정인 자 ※ 졸업예정자는 서류접수 마감일('21. 4. 30.)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이전 지역인재 기준은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639호)에 따름
외국어1 (영어)	○ 공인영어시험성적 일정 기준 이상: 서류전형 5% 가점 부여 - TOEIC: 800점, NEW TEPS: 301점, TOEFL iBT: 91점, TOEIC SPEAKING: 130점, OPIc: IM2
외국어2 (제2외국어)	○ 제2외국어 공인성적 보유: 서류전형 1%~5% 가점 부여(타 언어 성적 중복 인정) ※ 인정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인정 성적: JPT, JLPT, 新HSK, Flex(듣기, 읽기), TORFL, DELE, DELF-DALF, Goethe Zertifikat

* 서류전형: 다른 유형의 우대 가점은 합산하되, 서류전형 만점의 최대 10%까지 반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청년인턴(일반_서울)' 및 '청년인턴(장애인_제주)'의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외국어성적은 '19. 6. 10. 이후 응시하고, '21. 4. 30. 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며, 조회 불가 성적 및 기업체·단체의 특별시험 성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3. 근무 조건

- 계약 기간: 5개월(2021년 6월 10일~2021년 11월 9일)
 - ※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음
- 근무 시간: 주5일(월~금), 09:00~18:00(1일 8시간)
- 근무 형태: 전일제
- 보 수: 월 185만원
 - ※ 세전금액(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기준, 숙소 미지원
- 휴 가: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 휴가 부여
- 취업 지원: 근무 기간 중 취업시험, 취업박람회 참가, 학과시험 등 취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전 제출 시 특별휴가 부여
- 수료자 우대: 재단 정규직 5급 신규채용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 ※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한 청년인턴 수료자 대상(1회에 한함)
- 담당 업무: 재외동포사업 업무 지원
 - ※ 근무 부서 및 인원: 동포단체지원부(1명), 홍보문화조사부(2명), 교육사업부(1명), 차세대사업부(1명), 한상사업부(1명), 인권사업부(1명)
- 근무 장소
 - 제주 본사(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서귀포시 제2청사))
 -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9(외교센터 4층))

4. 전형절차 및 평가 사항

○ 전형절차

구 분	내 용	일 정	합격자 발표	합격 인원
서류전형	지원서 접수	'21. 4. 16.(금)~ '21. 4. 30.(금) 14:00	'21. 5. 13.(목)	3배수
면접시험	종합 면접	'21. 5. 20.(목)	'21. 6. 4.(금)	
근무 시작일		'21. 6. 10.(목)		

- * 면접시험 장소: 재단 제주본사(서귀포시 신중로 55)
- * 전형 별 세부일정 확정 또는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 * 면접 시 ①신분증, ②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자에 한함) 사본 지참
- * 전형 별 합격자 발표는 채용홈페이지 전형결과(합격자조회) 에서 확인

○ 전형별 평가 사항

구 분	평가 사항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평가(100%) - 교육사항(40%),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60%) ※ 응시자격 부적합자: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우대사항 가점: 서류전형 만점의 최대 10%까지 반영
면접시험	○ 종합면접 - 지원자의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지원서 접수

가. 청년인턴(일반_제주)·청년인턴(일반_서울)

- 접수기간: '21. 4. 16.(금)~4. 30.(금) 14:00
- 접수방법: 재외동포재단 온라인 채용시스템
 -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서 작성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 내용을 신중히 작성 바랍니다.
 - * 성별·신체조건·학력·학교명·연령·가족관계·출신지역·혼인여부 등 개인 정보

나. 청년인턴(장애인_제주)

- 접수기간: '21. 4. 16.(금)~4. 30.(금) 14:00
- 접수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 접수(강경옥 과장, 064-710-5001)
 - ※ 담당자 유선 통화 연결로 지원서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 받은 후 지원서 접수
 - ※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수 시, 기간 내 지원서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 내용을 신중히 작성 바랍니다.
 - * 성별·신체조건·학력·학교명·연령·가족관계·출신지역·혼인여부 등 개인 정보

6.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면접일에 면접장에서 현장 제출합니다. (※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제출 서류	○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졸업(예정)증명서(지역인재 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가점비율, 제출처(재외동포재단) 명기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어학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2019. 6. 10. 이후 응시하고, 2021. 4. 30. 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 ○ 학교교육 이수내역 증명서 1부 ※ 과목명, 성적 등의 원활한 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과목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 경력 사항에 관한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

- 서류 내 주민등록번호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면접위원에게 절대 제공 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에 대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작성한 내용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이 다르거나 증빙 불가능한 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되므로 사실 내용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간 지원자 본인이 청구(동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3호 서식)하는 경우에 한해 기 제출한 채용 서류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사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합니다.

7. 기타 사항

- 본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지역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일괄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전형별 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시험(우선순위):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서류전형 총점 고득점자 ③장애인 ④공인 어학성적 우수자(영어, 제2외국어 순) ⑤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전형 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불합격자 중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별첨4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hr@okf.or.kr)로 제출 바랍니다.
 - ※ 제출 기한: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익일 17시까지
- 입사포기, 결격 사유 발견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공지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항목별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오류 발생 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지원서 작성 내용과 자격증 등 제출서류가 허위 혹은 위·변조된 경우, 부정 행위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입사를 제한합니다.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 사항(채용결격사유)

재외동포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별첨
1. 직무기술서 1부.
 2. 제2외국어 점수 가점 기준 1부.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1부.
 4. (양식)이의신청서 1부. 끝.